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시판 후 조사의 특별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제 · 개정고시 및 고시 · 훈령 · 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 개정고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 법무부장관(의료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주무관 박예정 사무관 문성은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전결 2020. 12. 14. 김정연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7537 (2020. 12. 1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5 팩스번호 043-719-3350 / pyj9786@korea.kr / 대국민 공개